

한국부식방식학회 연구윤리 규정

제1조 목적

한국부식방식학회 회원의 역할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. 본 연구윤리 규정은 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 윤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.

제2조 연구윤리 규정의 준수

- ① 모든 회원은 본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- ②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 협약서를 연구윤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
제3조 기본적 책무

- ① 모든 회원은 과학지식을 증진시키고 기술혁신을 추구하여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.
- ② 모든 회원은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.
- ③ 모든 회원은 탐구의 자율성을 소중히 여기며,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는다.
- ④ 모든 회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.

제4조 연구관련 윤리

가) 저자의 연구윤리

- ①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.

- ③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.
- ④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으며,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, 취소,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⑤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.
- ⑥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,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.
- ⑦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.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.
- ⑧ 연구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.

나) 저자됨

- 1)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
 - ①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한다.
 - ②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한다.
- 2)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동저자 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동연구자로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저자들은 저자기재 순서에 대한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.
- 3) 교신저자는 연구 착상 및 설계, 자료 확보, 연구수행, 논문 작성 및 논문 발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.
- 4) 주저자 또는 제 1저자는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한다.
- 5) 저자의 소속은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. 다만,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.

다) 심사위원의 연구윤리

- ① 모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

게 심사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.

- ②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③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④ 논문 투고자와 논문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.
- 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.

라) 편집위원의 연구윤리

-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, 나이,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을 근거로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.
- ②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.
- ③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.
- ④ 편집위원의 투고 논문은 다른 편집위원이 심사하여야 한다.

제5조 연구부정 행위

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학술지, 학회 학술활동 과정에서 고의로 내용을 위조, 변조, 표절, 중복게재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- ① ‘위조’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‘변조’라 함은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③ ‘표절’이라 함은 고의적으로 국·내외 학술지, 학술대회 발표논문, 연구보고서, 석·박사 학위논문, 서적, 잡지,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, 견해, 표현,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.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경우(자기 표절)에도 적용된다.

④ ‘중복게재’라 함은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또는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.

⑤ ‘부당한 논문저자 표시’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⑥ 기타,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⑦ 각 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연구부정 행위의 범위는 연구윤리 관련 유관기관의 지침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.

‘유관기관’이라 함은 관련부처(ex.교육부), 한국연구재단,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,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, 연구윤리정보센터를 말한다.

제6조 연구윤리 위원회

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 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칭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부회장, 편집이사, 총무이사,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맡게 되며,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 위원회의 운영

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.

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.

제8조 위원회의 기능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학회와 관련된 논문, 계획서,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

②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

③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항

④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 책임자나 관리 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

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

제9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

① 모든 회원은 학회와 관련한 연구윤리에 대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.

②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,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.

③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④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.

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,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.

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⑦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,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㉔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.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,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.

㉕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3년 이상 금지한다.

⑧ 본 연구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중대한 행위를 한 회원은 위원회를 통해 회원자격 박탈, 회원자격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,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.

제10조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부칙

1. 본 규정은 2008년 9월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한다.